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윤재옥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8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4. 16.

발의자 : 윤재옥 · 김상훈 · 김정재
김기웅 · 최수진 · 정희용
김민전 · 서천호 · 서지영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건설현장에서 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사고로 대형 인명피해를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높음.

하지만 건설현장에서의 마약, 음주운전 등에 대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이를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개정하고, 약물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 조종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, 음주운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(안 제28조 및 제40조 등).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제5호 중 “제7호”를 “제8호”로 한다.

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제8호 또는 제9호”를 “제8호, 제9호 또는 제10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”를 “술에 취한 상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제9호 및 제10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

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

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

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
한 고용주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
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
조종한 자

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
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

한 고용주

제41조제17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<p>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2호,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. ----- 제 8호, 제9호 또는 제10호----- ----- -----.</p>
<p>1. ~ 6. (생 략) 7.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<u>술에 취하거나 마약 등 약물을</u> <u>을 투여한 상태</u> 또는 과로· 질병의 영향이나 그 밖의 사 유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</p>	<p>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----- <u>술에 취한 상태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8.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<u>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 상태</u> <u>로서 정상적으로 조종하지</u> <u>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</u> <u>건설기계를 조종한 경우</u></p>
<p>8. · 9. (생 략)</p>	<p>9. · 10. (현행 제8호 및 제9호 와 같음)</p>
<p>제40조(별 칙) <u><신 설></u></p>	<p>제40조(별 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</p>
	<p>1.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</p>

<p><u>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</u></p> <p><u>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</u></p> <p><u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</u></p> <p><u>1.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 설기계를 조종한 자</u></p> <p><u>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</u></p> <p>제41조(별 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.</p> <p>1. ~ 16. (생 략)</p>	<p><u>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</u></p> <p><u>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</u></p> <p><u>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</u></p> <p><u>1. 제27조의2제1항제1호를 위반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 설기계를 조종한 자</u></p> <p><u>2.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제1호에 따른 자가 건설기계 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 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</u></p> <p><u>③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)</u></p> <p>제41조(별 칙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16.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-

<p><u>17. 제27조의2제1항제1호 또는</u> <u>제2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</u> <u>거나 마약 등 약물을 투여한</u> <u>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</u> <u>자와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</u> <u>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</u> <u>리지 아니하거나 건설기계를</u> <u>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</u></p> <p>18. · 19. (생 략)</p>	<p><u><삭 제></u></p> <p>18. · 19.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